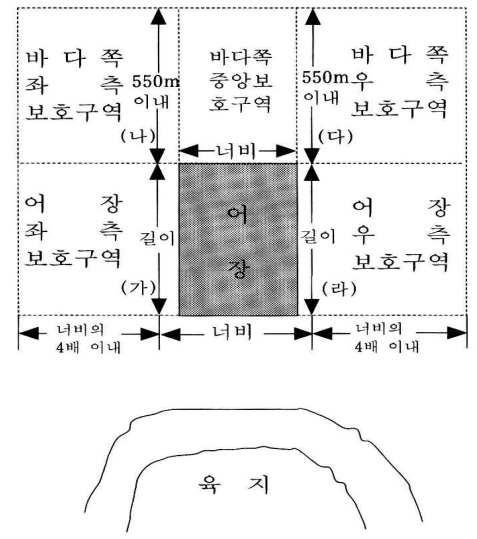


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5]

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(제23조 관련)

구분	보호구역	보호구역 도해(예시)
<p>1. 정치망어업</p>	<p>가. 어장의 바다 쪽 중앙 보호구역은 각각 어장 길이의 연장선 이내의 수면. 다만, 바다 쪽 보호구역의 길이는 5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나. 어장의 좌우측 보호구역과 어장의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의 좌우측 보호구역의 총길이는 어장너비의 8배 이내로 하되, 2,6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 <p>비고</p> <p>1) 어장의 길이는 (가)기점에서 (나)기점 또는 (라)기점에서 (다)기점에 이르는 선을 측정한다.</p> <p>2) 어장의 너비는 (가)기점에서 (라)기점 또는 (나)기점에서 (다)기점에 이르는 선을 측정한다.</p>
<p>2. 마을어업</p>	<p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어장의 배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.</p>	

비고

제2호의 보호구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등대(북위 34도36분32.7초, 동경 127도39분18.8초)와 여수시 돌산읍 돌산항(북위 34도36분46.9초, 동경 127도43분 12.5초)을 잇는 선 안쪽의 가막만 해역에만 정할 수 있다.